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8개월 장관 직권처분...서울시에 추가 2개월 요청 GS건설 83개 현장 자체점검 ‘적정’... 주거동은 철근누락 없어 원희룡 “가장 엄중한 처벌 통해 단호 대처...건설 카르텔 혁파”

국도교통부는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주체별 처분 사항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설계자 2년 영업정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 5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5.2~11)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이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1항 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정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GS건설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적정 확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머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한편,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와 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콘크리트의 다짐 불량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담양 대전파출소, 보이스 피싱 예방 등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

담양경찰서(총경 박송희) 대전파출소는 대전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맞춤형 범죄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경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개최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지난 25일 경찰서 4층 보배마루에서 2023년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순천 서면파출소, 이상동기 범죄 예방 ‘민·관·경 공동체 합동순찰’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문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방범죄를 예방 위해 민·관·경 합동 특별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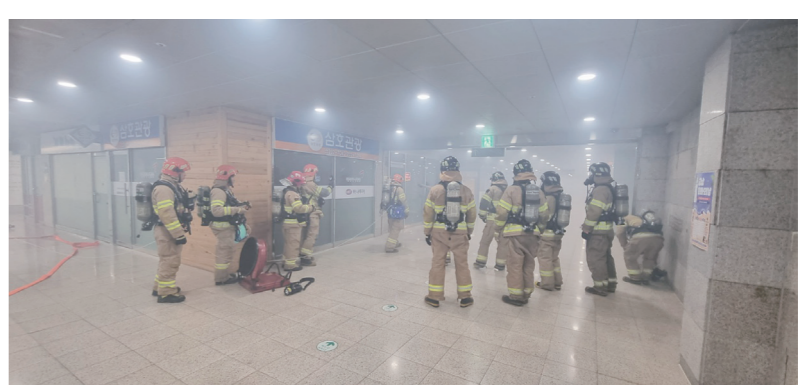
순천=김승호기자



광양 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등 캠페인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지난 25일 광양중마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를 맞아 경찰, 협력단체, 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서, 본서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24일 관계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금남지하도상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수해경, 을지연습 기간 실전 같은 항만 방호 및 대테러 훈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을지연습 기간 여수 광양항 미식별 선박 침투에 대비한 항만 방호와 해양 테러 대응 훈련이 실전 같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법원 집행관 사무소와 자동차 보관계약업자 장기간 보관 차량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보관 계약, 법원이 국가기관 지위서 체결한 것”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보관하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차료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이다. 아울러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 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일체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도 제출했다.

당초 A씨는 자동차 20대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다른 보관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자동차의 점유를 맡기면서 총 41대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장기간 보관된 차량의 보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사건당사자로부터 광주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 보관에 관한 임차계약 등은 법원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상의 의무자는 국가이고, 따라서 보관자는 개인은 물론,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보관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대법 역시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보관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일 오염수 방류 첫 주말, 한산한 조개구이 식당

이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는 오염수 방류 후 첫 주말인 27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위치한 회, 조개구이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긴 머리 가발 쓰고, 앵글 잡고’ 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실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긴 머리 가발을 쓰고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 도서관·독서실·치과·버스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33차례에 걸쳐 몰래 보던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했다.

A씨는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렌즈를 올려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